

September 9,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1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8. 31. ~ 9. 4.)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정부의 2021년 예산안(R&D 분야 및 주요 정부 소관 부처)을 소개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20. 9. 2.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 관련 총 2,103개 지원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기 개발·보완(8월말)된 ‘데이터 구축 공통 가이드라인’을 추경사업에 적용 및 자율주행, 의료 등 주요산업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하여 핵심분야를 국내표준화, ② 통합 빅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데이터 가격산정, 품질평가 방법 등을 담은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③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요기관이 전문계약 트랙에 따라 계약·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부터 계약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운영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과기부2]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 본격 추진

2020. 9. 4. 디지털 뉴딜계획에 따른 3차 추경을 반영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공·의료·산업분야에 양자암호통신 시범 기반 등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8개 협력체에 2020년 123억원 지원, ② 수요기관별 네트워크 특성에 맞춘 양자암호통신 실증 시스템과 양자내성암호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맞춤형 응용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내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 경험 축적, ③ 연말까지 시범사업 추진 및 2021년 2월경 산학연과 함께 사업 결과 공유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ICT 산업의 초석을 다진다



[산자부1] 차세대 선도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태양광 R&D 혁신전략

2020. 9. 2.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향후 5년간 태양광 R&D 예산 약 3,300억원을 고효율 태양전지(약 1,900억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약 980억원), 저단가 공정기술 분야(약 400억원)에 집중 투자, ② 셀 모듈기업 수요 반영한 대형 R&D 추진(3년간 200억 이상) 및 대기업인 셀·모듈 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 참여조건 완화(9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발표 예정), ③ 3년간 약 250억원을 투자하여 국산 소재 부품 장비의 양산성 검증, 업체간 공동 기술개발, 성능·효율 공인검증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태양광 R&D 혁신전략



[산자부2]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

2020. 9. 3.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주요 내용으로 ① '20년 467억원 등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5,216억원(국비 4,277억원) 투입, ② 미래 유망 5대 전략분야[미래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공공(에너지 포함)]에서 발굴된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중심으로 과제 기획, ③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의 분야간 연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 사업단을 운영하고 대기업의 양산라인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소재·장비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를 앞당길 상용화 기술개발 본격 추진



[개보위]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 9. 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식별가능성을 낮추어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 ③ 결합·반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작업을 거쳐 9월 중 통합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20. 9. 1.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투자소득 도입 이후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종 금융상품 출현시 적정과세가 되도록 과세체계 보완, ②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③ 온라인 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와 국제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맞춰 국제적 용역의 과세 원칙 정비 등 과세체계 선진화, ④ 디지털세 관련 장기대책 최종 합의시 합의안 및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방안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재부, 금융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2020. 9. 3.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성장금융·산은의 뉴딜사업 지원 주관 및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정비, ②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대출 공급(5년간 100조원), ③ '20. 4분기 중 선정예정인 총 168개+α 혁신기업 중 일정수준(예: 60% 이상)을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참고자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국토부] 국토교통 혁신펀드 올해 170억 결성 완료

2020. 9. 4.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등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개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 신설 및 정부예산 100억 원 출자, ②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③ '27년까지 약 2천억 원을 출자하여 총 3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토교통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



* 정부 2021년 예산안(R&D 분야 및 주요 정부 부처 관련)

각 정부부처는 2020. 9. 3.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R&D 분야 및 주요 부처 관련 보도 자료를 첨부 드립니다.

R&D 분야	금융위	중기부	방통위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0. 9.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 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차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 확대, ③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등이 있음

> 입법예고 법안

[과방위]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2020. 8. 31.부터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②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③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등이 있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20. 8. 31.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② 겸업승인(법 제17조)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도록 규제완화 등이 있음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2020.9.2.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마련 및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② 정보보호지침 권고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 명확화, ③ 침해사고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정부)」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정무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이 법 시행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의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산자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자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의원 등 12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정무위] 「상장회사법안(김병욱의원 등 17인)」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택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기재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며,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감사 등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硬性談合)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행안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4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미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제73조제1호, 제75조제2항제4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산자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법사위]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